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7일

2. 제안이유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라 그간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온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사무 중 공사에 위탁할 수 없는 사무를 구분하여 재정비하고,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 완화와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표준하역비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표준하역비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61조)
 - 표준규격품 중 국내산 정가수의 거래의 경우 파레트 반입 조건을 삭제하여 표준하역비 적용 대상 확대
 - 시장이 표준하역비 적용 대상인 규격출하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관계 규정 정비(안 제77조, 안 제78조)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서 ‘도매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
- 농수산물도매시장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6조)
 - 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대구시가 직접 수행할 사무를 규정

4. 검토의견

□ 제안 취지 및 적법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설립에 따라 공사의 핵심 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중 대구시가 직접 수행해야하는 사무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 경감을 위해 표준하역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 설립에 따른 사무 위탁 범위 조정과 도매시장 공공성 증진을 위한 조치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제반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계 법령과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주요 내용 검토

○ 표준하역비 적용 대상 확대(안 제61조)

- ▶ 현행 조례는 표준하역비*를 적용하는 청과부류 규격출하품을
 - ▲ 국내 농산물 중 완전규격출하품 ** (파레트반입·파레트경매)과
 - ▲ 파레트로 반입되는 표준규격품*** 중 국내산 정가수의****로 거래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 ▶ 안 제61조(표준하역비의 부담)제4항에서는 표준규격품 국내산 정가수의 거래의 경우 파레트 반입 조건을 삭제하여, 표준하역비의 적용대상을 표준규격품 중 국내산 정가수의 거래 전체로 확대하는 것임.

* 표준하역비 제도 :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부담토록 한 제도

** 완전규격출하품 : 파레트에 적재하여 출하함으로써 도매시장 반입 즉시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출하품

*** 표준규격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에 따른 ‘농산물 표준규격’의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

**** 정가수의매매 : 경매와 달리 도매법인이 출하자-중도매인 사이에서 물량과 가격을 조율하는 거래방식. 가격 급등락과 유통비효율 등 경매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확대를 도모

- 또한, 표준하역비를 적용하는 ‘국내 농산물 중 완전규격출하품’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농안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의 비상장 품목 거래에 대해 ‘파레트 반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파레트로 반입되는 표준규격출하품

중 출하자, 품목, 등급이 모두 동일한 경우'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표준하역비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임.

조례 개정(안) 반영시 표준하역비 부담액(예상)				
○ 표준하역비 증가내역(21년 기준으로 작성)				(단위:억원)
거래금액	총하역비 [㉠]	현 표준하역비 [㉡] ([㉡] / [㉠])	개정(안) 반영 시 예상 표준하역비 [㉢] ([㉢] / [㉠])	증감
8,779	70	5.5 (8%)	20.9 (30%)	증15.4(22%)

※ 대구시(농산유통과) 제출자료

- ▶ **안 제61조제5항의 신설**은 제4항의 표준하역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표준하역비 적용 대상인 규격출하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음.
- 시장이 출하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격출하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유통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하역기계화를 촉진하고,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한편,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한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¹¹⁾ 보고자료에 의하면, 도매시장 3개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지난 5년간('18~'22) 합계 29억 원에서 48억 원에 달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이 과다하고, 법인의 주된 수입원으로써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2000년 12월 개정 이후 20년 이상 조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위탁수수료의 재검토를 통해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11)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류) 특정감사 결과(감사위원회-9731, 2023.8.10.)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난 5년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청과	△△청과	☆☆청과
'18 ~ '22년 합계	4,343	2,966	4,887

※ 대구시(감사위원회) 보고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미 타지역 중앙도매시장 대비 낮은 위탁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를 추가로 인하하는 데는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상대적으로 타지역 대비 부담비율이 낮은 도매시장법인의 표준하역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됨.

[전국 중앙도매시장 표준하역비 현황]('21년)

(단위 : 억원, %)

구분	대구	서울(가림)	부산(업궁)	인천(구월)	인천(삼산)	광주(기화)	대전(오정)	대전(노은)	울산	
위탁수수료(%)	6.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실 수수료(%)	5.87	4.85	5.95	6.01	6.16	5.96	5.79	5.93	6.84	
하역비	계	66 (0.71)	324 (0.69)	47 (0.89)	30 (0.85)	25 (0.87)	35 (0.81)	36 (0.82)	22 (0.77)	16 (1.14)
	출하자 부담	60 (0.64)	83 (0.18)	46 (0.87)	22 (0.63)	18 (0.61)	35 (0.80)	33 (0.74)	19 (0.66)	16 (1.13)
	법인 부담	6 (0.07)	241 (0.51)	1 (0.02)	8 (0.22)	7 (0.26)	1 (0.02)	4 (0.08)	3 (0.11)	0.1 (0.01)

※ 대구시(농산유통과) 보고자료 발췌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도매시장 각종 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77조, 안 제78조)

- ▶ 안 제77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제3항, 안 제78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제3항은 현행 조례에서 「농안법」의 위임에 따라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서 '도매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공사 설립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운영 업무가 공사로 위탁될 예정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더하여, 향후 위원 구성에 있어 공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도매시장 관리업무 권한의 위탁 규정 정비(안 제96조)

- ▶ **안 제96조(권한의 위탁)**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도매시장 관리·운영 업무를 공사 사장에게 위탁하도록 개정하고, 그 중 법적 또는 업무 성격상 공사 위탁 업무로 부적합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나열하여 대구시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 현행 조례와 비교해 보면, 현행 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래 품목의 지정,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자본금 및 최저거래 규모 설정, 중도매업의 허가 등 허가·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을 대구시로 회수하고, 공사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보증금 관리 등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과 출자 전환 후 공사의 재산이 되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공사 사장에게 위탁하는 것임.

[주요 사무 권한 대비표]

구분	현행	구분	개정
시장	1. 제6조 도매시장법인 상한수 [안 제96조제2호] 2. 제7조 도매시장법인 지정 [안 제96조제3호] 3. 제9조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안 제96조제4호] 4. 제34조 시장도매인 지정 [안 제96조제11호] 5. 제36조 시장도매인 재지정 [안 제96조제12호]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조 거래품목 지정 (회수) [안 제96조제1호] 7. 제10조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회수) [안 제96조제5호] 8. 제14조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규모 (회수) [안 제96조제6호] 9. 제18조 도매시장법인 휴·폐업 신고 (회수) [안 제96조제7호] 10. 제23조 중도매인 상한수 (회수) [안 제96조제8호] 11. 제24조 중도매업 허가 (회수) [안 제96조제9호] 12. 제28조 중도매인 최저거래규모 (회수) [안 제96조제10호] 13. 제38조 시장도매인 자본금 (회수) [안 제96조제13호] 14. 제39조 시장도매인 최저거래규모 (회수) [안 제96조제14호] 15. 제52조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 허가 (회수) [안 제96조제15호] 16. 제91조 행정처분의 기준 (회수) [안 제96조제16호]
	1. 제3조 거래품목 지정 2. 제10조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3. 제11조 도매시장법인 보증금 납부 4. 제12조 도매시장법인 보증금 반환 5. 제14조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규모 6. 제18조 도매시장법인 휴·폐업 신고 7. 제23조 중도매인 상한수 8. 제24조 중도매업 허가 9. 제28조 중도매인 최저거래규모 10. 제29조 중도매인 보증금 납부 11. 제30조 중도매인 보증금 관리 12. 제38조 시장도매인 자본금 13. 제39조 시장도매인 최저거래규모 14. 제40조 시장도매인 보증금 납부 15. 제41조 시장도매인 보증금 반환 16. 제52조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 허가 17. 제86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18. 제88조 시설사용의 허가 취소 등 19. 제91조 행정처분의 기준		1. ~ 2. <삭제> 3. ~ 4. (현행과 같음) 5. ~ 9. <삭제> 10. ~ 11. (현행과 같음) 12. ~ 13. <삭제> 14. ~ 15. (현행과 같음) 16. <삭제> 17. ~ 18. (현행과 같음) 19. <삭제>
관리사무소장		→	

※ 대구시(농산유통과) 보고자료 참조

- 「농안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공사)의 관리업무 범위 내에서 적정한 위탁 규정으로 사료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4.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5.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감독
6. 법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도매시장사용료·부수시설사용료의 징수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와 농산물 출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표준하역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공사 위탁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하게 구성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대구시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출하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며, 도매시장 관리·운영 사무의 공사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도매시장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